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「건설기계관리법」 개정안이 국회 논의 중에 있음. 이에 따라 봉인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문·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국무조정실 사전규제심사(2026. 1. 20.) : 규제심사 비대상

3) 입법예고(2026. 1. 00. ~ 2. 00.) 예정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부착 및 봉인 등”을 “부착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표시방법, 봉인방법”을 “표시방법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제3호 중 “부착하거나 봉인을 하기”를 “부착하기”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 “(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또는 봉인)”을 “(등록번호표의 재부착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등록번호표나 봉인이”를 “등록번호표가”로, “부착하거나 봉인하려”를 “부착하려”로 한다.

제23조제6항제1호의2 중 “봉인방법 또는 부착위치가 각각 별표 3 또는”을 “부착위치가”로 한다.

별표 3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3조(등록번호의 표시등) ① · ② (생략) ③ 등록번호표와 그 <u>부착 및 봉인</u>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2. (생략) 3. <u>등록번호표의 봉인방법: 별표 3</u> 4. (생략)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규격, 재질, <u>표시방법</u>, <u>봉인방법</u>, <u>부착위치</u> 및 매수(이하 이 조에서 “규격등”이라 한다)대로 부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부착할 수 있다. 제17조(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등) ①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등록번호표제작등	제13조(등록번호의 표시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부착</u>----- ----- 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4.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 <u>표시방법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. 제17조(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등) ①----- ----- -----

을 할 것을 통지하거나 명령해야 한다.

1. (생략)

2. 삭제

3. 건설기계소유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다시 부착하거나 봉인을 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

4. ~ 7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18조(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또는 봉인) ①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나 봉인이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부착하거나 봉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등신청서에 등록번호표(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)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23조(정기검사의 신청등) ① ~ ⑤ (생략)

⑥시·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해당 건설기계가 제27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부착하기 -----

4. ~ 7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등록번호표의 재부착) ①----- 등록
번호표가 -----
----- 부착
하러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정기검사의 신청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-----

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부적합사 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 을 때에는 해당 건설기계소유자 에게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건 설기계 시정권고 통지서에 시정 권고 항목 및 그 사유 등을 적 어 발급하고,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적어 발급할 수 있다. 1. (생 략) 1의2.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<u>봉인방법 또는 부착위 치가 각각 별표 3 또는 별표 3 의2와 다른 경우</u> 2. ~ 16. (생 략) ⑦·⑧ (생 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1의2. ----- ----- <u>부착위치가</u> ----- ----- ----- 2. ~ 16. (현행과 같음) ⑦·⑧ (현행과 같음)
--	--